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(공시송달)공고 제2026-153호

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) 공시송달 공고

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11. 16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

1. 건　명: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
2. 근　거: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제15조제3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 불능 사유
박○수	95.12.03.	- 경기도 성남시 ○○구 ○탑로 6○번길 2○ - 천안시 ○○구 천○○4길 2○, ○○1동 5○○호	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)	▪ **처분제목**: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▪ **처분원인**: 주식회사제임스드림센터 소속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2026. 4. 2.~ 2026. 4. 23. 기간에 총 23일간 근로 사실 미신고 ▪ **반환명령액: 1,849,340원**	1. 주소불명,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 2. 본인 연락 두절

4. 공고기간: 2026. 11. 16. ~ 2026. 11. 30.(15일간)
5.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고용관리과(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, 충남타워6층)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(0503-8803-0693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유소연(Tel. 041-620-743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